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0. 27 선고 2020가단482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담당변호사 김준영, 강경식
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9,054,6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피고는 2019. 8. 14. 원고를 상대로 “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.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5억 8,800만 원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(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265),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확정판결’이라 한다)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9. 10. 15.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). 피고는 전보배상으로서 2019. 11. 29.과 2020. 1. 31. 원고의 제3채무자들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(같은 법원 2019타채45076, 2020타채243) 2020. 4. 2.경까지 39,054,626원을 추심하였다.

다. 한편 원고는 2020. 2. 26. 피고의 증권계좌로 주식회사 D의 주식 6만 주를 이체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이체행위’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정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가 추심한 위 39,054,62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심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[을 1,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, 관련 민사판결(서울고등법원 2020나2048681)에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채무의 이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]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박광민

[별지1]

순번	발행회사	주식의 종류	발행주식의 수	액면금	주주명부상 소유자	청구주식수
1	주 []	기명식 보통주	26,205,297	500원	[]	60,000
합 계						60,000

가액산정의 근거

60,000주 x 10,000원(1주당, 갑 제12호증 참조) = 600,000,000원

